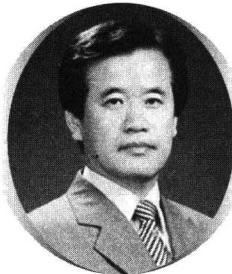


## 제 언

# 2006년도 산업보건 정책방향



송 영 중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근로자의 건강은 개인과 가족 행복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적자원 보호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건강한 일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기업의 보건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아직도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유해작업의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기업의 보건관리 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어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 예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음성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과 같은 전통적 직업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산업구조·고용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작업관련성질환이 중요한 근로자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있으며, 2005년 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말헥산 중독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2005년 12월 위원회의 개선안이 확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6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및 노출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별 노출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를 120종에서 177종으로 확대하고 병력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로 악용되던 채용시 건강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등 근로자 건강진단의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보건분야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예방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노사공동의 예방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업종 사업장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발병위험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온 2005년 10월 현재 업무상질병 발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었던 작업관련성질환도 21.5%가 줄어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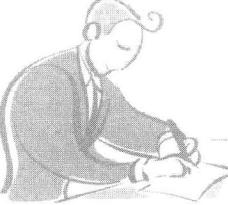
금년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협력적 산재예방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직업성 질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 당사자보다는 법률적 규제와 전문가 주도의 현행 산업재해 예방체계로는 더 이상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공동의 관심사항인 만큼 양 주체인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발생 책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의 점진적 도입 등 노사협력적 산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법상 재해예방 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의·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재취약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고령자, 외국인 등 특성별로 안전보건교육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간 근로, 빈번한 이직 등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계층에 대한 법적용 방법의 개선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업 노·사·정 협의체」에서 교육·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분야에 대한 시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을 국제기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맞게 정비하고 선진 외국과 차이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도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혁신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불시작업환경측정, 발암성 물질에 대한 허용기



## 제 언

준 설정, 위험성평가 제도 가미 등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혁신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석면제품의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품별로 단계적인 제조·수입 등 금지방안 마련과 함께 석면분석기관 육성, 석면 해체·제거 전문기관 허가제 등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석면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면함유제품·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현장의 관심이 큰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자 다수 발생 및 부담작업 과다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기법 등 맞춤식 예방 기술지원도 제공하는 한편 예방활동 우수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Porno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발병위험도 평가에 기초한 맞춤식 건강관리 기술지원 및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의 사업장 적용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 보완 및 각종 지원사업의 내실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관리 주체로서의 노사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는 노·사·정 그리고 민간전문가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